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 안내

1.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2.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12.1 공포 및 시행되었으니, 귀 기관의 회원사, 기술지원 신청사업장 등에 다음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(붙임1 참조)

나.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(붙임2의 사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참조)

붙임 1.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 일부개정 안내(12.1 시행) 1부.

2. 관련 보도자료 1부. 끝.



수신자 대한산업보건협회, 대한산업안전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한돈협회, 한국상하수도협회, 산업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,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유관기관

주무관

이승철

과학기술서기관

윤현욱

산업보건정책과 전결 2025. 12. 1.

장

박종일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정책과-690

(2025. 12. 1.)

접수

우 30148

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(반곡동 88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
본부)

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875

팩스번호 -

/ sc1227@korea.kr

/ 대국민 공개